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심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시 특별다수제 규정〉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7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심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시 특별다수제 규정(안 제22조 제5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심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시 특별다수제 규정(안 제 22조제5항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2조제5항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제재조치¹⁾를 할 때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회의 등) ①~④(생략) <신설>	제22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33조제2항제 10호에 따른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심위는 법 제21조²⁾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1) 이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음.

1.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3. 주의 또는 경고

2)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공공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관련 심의규정도 모호함에 따라 규제 적용의 일관성 부족,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어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최근 방심위 3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한 대부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의 제재조치 의결에는 전체 9인 중 7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특정 성향의 위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방송·언론의 자유가 심의의 남용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높은 의결정족수를 요구함에 따라, 소수 위원의 의도적인 반대나 회의 불참 등으로 제재조치 의결이 어렵게 될 경우 방심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소수의 반대만으로도 모든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어 오히려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논평의 영향 및 제작 환경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인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도입하더라도 방심위원 결원 시 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적위원의 비율(2/3 의결 등)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논평은 다른 장르보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효율적인 심의와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어렵게 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채널A**는 심의절차의 형평성 저해, 심의제제의 예측가능성 약화로 방송제작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MBN** 또한 현재의 심의제재 절차

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JTBC는 개정안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